

報 道 參 考 資 料

題 目 : 交 通 稅 法 時 行 令 改 正 案 立 法 提 案

◇ 財 政 經 濟 部 는 '04.3.1부 터 휘 발 유 · 경 유 에 적 용 되 는 교 통 세 율 을 조 정 하 기 위 하 여 교 통 세 법 시 행 령 개 정 안 을 입 법 예 고 하 였 으

과세대상	세 목	세 율		비 고
		현 행	개 정 안	
휘 발 유	교 통 세	572원/ℓ	559원/ℓ	※ 유류가격에는 영향없음 • 세액총액은 동일 • 세목간 액수만 변동
	주 행 세	교 통 세 의 14.95%	18%	
경 유	교 통 세	261원/ℓ	255원/ℓ	
	주 행 세	교 통 세 의 14.95%	18%	

◇ 이 번 교 통 세 율 조 정 은 '03.10월 버 스 · 택 시 에 대 해 서 도 화 물 차 와 동 일 하 게 유 가 보 조 금 을 추 가 지 급 하 기 로 함 에 따 라 이 의 재 원 마 련 등 을 위 하 여

○ 지 방 주 행 세 율 을 인 상 하 는 대 신 교 통 세 율 을 인 하 하 려 는 것 임

◇ 이 번 조 정 으 로 유 류 가 격 변 화 는 없 음

※ 운 송 업 계 유 가 보 조 금 재 원 은 지 방 주 행 세 수 로 마 련 하 고 있 으 며 지 방 주 행 세 율 은 지 방 세 법 시 행 령 개 정 으 로 조 정 (행 자 부 소 관)

報 道 資 料 生 產 課 : 稅 制 室 消 費 稅 制 課 (2110-2324~6)

소 비 세 제 과 장 김 낙 회 , 사 무 관 이 보 인

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

<참고1>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변경내역(2003)

- ◇ '03.6월 이전 : 유류세 누적인상분의 50%
- ◇ '03.7월~'04.6월 : 기존 인상분의 50% + '03.7월 인상분 100%
- ◇ '04.7월 이후 : 기존 기준으로 환원(누적 인상분의 50%)

- '03.5월 화물차에 대하여 '03.7.1유류세 인상분 전액 보조금 지급하기로 결정(화물연대와의 합의)
- '03.10월 버스·택시에 대하여도 화물차와 동일하게 유가보조금 추가지급하기로 결정
(운송업 제도개선방안,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)

<참고2> 향후 추진일정

- ☐ '04. 2.10(화) 입법예고
- ☐ '04. 2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 확정
- ☐ '04. 3. 1부터 시행